

 경상북도	보도자료 【17. 1. 3.(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작성자	담당관	이재윤			
			사무관	배도석	주무관	노성호	
		연락처	054-880-4016	C·P	010-9690-1378		

경북도,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강화

- 2017년 1월부터 적용, 23개 시군 권역별 587명의 건축사 등록 -

경상북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2016. 8. 4시행)에 따라 허가권자(시장·군수)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 공관, 학교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상북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시·군 권역별로 신청을 받았다.

등록된 건축사가 없는 울릉군은 등록소재지가 포함시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울릉군 권역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87명이 신청했으며,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587명 전원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했다.

한편, 등록명부는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 및 심의 포함) 신청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되며,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재윤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시공품질 향상과 공사감리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으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강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공사 감리제도와 관련된 「건축법」 제25조 개정
- 2016.8.4. 시행, **2016.12.31.까지 종전규정 적용** -

■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감리제도 변경 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대상(설계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 ※ 건설업법을 적용 받지 않는 주거용 661㎡이하, 비주거용 495㎡이하 건축물 (공동주택, 공관, 학교 등은 제외)
 -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 소규모건축물과 분양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 ☞ 예외) 건축주가 해당 설계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 신기술 적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건축주가 지역건축사회를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현행제도 유지)
 - ⇒ 상기 건축물의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 감리자 지정절차
 - ☞ 감리자 명부작성(도지사) ⇒ 감리자지정 신청(착공신고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 ⇒ 감리자 지정(허가권자는 7일이내에 지정)
 - ※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지정방법은 도 조례로 정 함.
- 적정 감리비용 지불(시군 조례로 정함)
 - ⇒ 착공신고시 건축주는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 사용승인시 허가권자는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 여부 확인

★ (달라진 점)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를 할 수 없으며, 감리자 지정권한이 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변경, 감리비 현실화

■ 협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 감리자지정 등에 관한 업무 경상북도건축사회에 대행 건

- ⇒ 국교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대행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 등록명부 관리업무는 도 소관, 지정대장 관리업무는 허가권자 권한으로 시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 ⇒ 개정된 법령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법령 운영상 문제점이 다수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시행

○ 감리비 대가를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현실화해서 지급되도록 허가권자에게 권고

- ⇒ 2016.12.31.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른 감리비 지급이 타당

○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시 지역건축사회와 동일한 17개 권역으로 설정

- ⇒ 감리자 지정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협의 후 결정

○ 협회 미가입건축사에 대한 감리자 모집등록 및 감리자 지정 제재

- ⇒ 공사감리자 지정은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법 제25조 제2항,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규정한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어 협회 미가입을 사유로 감리자 지정 배제할 수 없음.

■ 조치계획

- 2016. 8월 : 조례안 작성 및 시·군과 건축사협회 협의
- 2016. 9월 : 최종 조례안 결정 및 공람·공고 및 의회 상정
- 2016.10월 : 건축조례안 공포
- 2017.01월 : 건축조례 시행